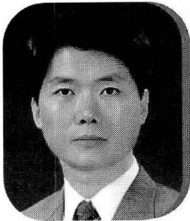


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

LAW Common Sense Information



글 _ 박종복 변호사

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청구채권의 1/10을,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4/5를, 예금 및 채권의 경우는 2/5를 공탁하되, 유체동산, 예금채권, 봉급채권의 경우는 이중 약 1/2을 현금공탁하여야 한다.

Q A에게 돈 1,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. A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싶다. A의 재산을 가압류할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.

A 가압류 재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변론없이 신속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
그런데 반면에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공탁명령을 하고 채권자가 그 담보를 제공하면 비로서 가압류명령을 하게 된다.

이때 담보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하여 그동안 법원마다 그 기준이 달랐으나 현재 실무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청구채권액의 1/10을, 유체동산의 경우는 4/5를, 채권이 나 그밖의 재산권은 2/5를 기준으로 공탁하여야 하고 위 금액은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, 가압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이나 예금채권, 봉급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있어서는 공탁금의 1/2에 대하여는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다.

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귀하가 청구할 1,0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, A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경우 1,000만원의 1/10 즉 1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하고, 이를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(발급비용은 대략 공탁금의 1% 선)로 갈음할 수 있지만, A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할 경우는 8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하고 이중 대략 400만원은 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나머지 4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고, A의 봉급이나 예금을 가압류할 경우에는 4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하고 이중 대략 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.

